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3.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통문화유산인 도예문화를 보존, 육성발전시키고 이천도자기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축제 제반사항 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함(안 제2조).

1.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
2. 이천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
3. 기타 도자기 축제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
2. 이천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
3. 기타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도자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예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